

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

의안 번호	8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국·도비사업 조정과 최소한의 자체사업 및 필수경비등의 반영을 위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6,9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.2%인 46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4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특별회계가 130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나. 세입예산은

일반회계가 지방세 34백만원, 세외수입 248백만원, 국·도비보조금 40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△357백만원이 감액되었음

특별회계는 국·도비보조금 17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세외수입이 △40백만원 감액되었음.

다.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가 경상예산이 11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사업예산 381백만원이 증액되었고, 예비비등 기타 △16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,

특별회계는 사업예산 130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1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36조

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

다만,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령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